

별첨2

가산점 부여 기준

□ **우리원 「직원 공개채용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지침」 별표 2**

제5조 (공고 및 전형방법) ① ~ ⑤ (생략)

⑥ 가산점은 별표 2에 따라 부여하되, 이중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가산점 적용대상자	자격기준	전형단계 적용 (만점의 %)			증빙서류
		서류	필기	면접	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전형별 5% 또는 10%		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	전형별 5%			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(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)
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3%	3%	-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차상위계층 확인서)
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3%	3%	-	한부모가족 증명서
자립준비청년	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(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)	3%	3%	-	보호종료확인서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3%	3%	-	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다문화가정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	3%	3%	-	다문화가족 증명서류
비수도권 지역인재	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중인 자	3%	3%	-	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
이전지역 지역인재	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	3%	3%	-	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
공공기관 청년인턴	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5개월 이상인 자(접수 마감일 기준)	-	-	우대*	인턴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
청년	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자(접수 마감일 기준)	-	-	우대*	주민등록등본
경력단절여성	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인 자	-	-	우대*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 별도의 가산점은 없으며,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차순위자 결정사항 반영 후 우대함